소양강문화제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22. 5. 19. (규정 제55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양강문화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워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문화제의 명칭은 소양강문화제(이하 “문화제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시기) 문화제의 개최 시기는 9월 넷째주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
1. 문화제의 기본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

2. 문화제와 관련한 자문 및 의견이 필요한 사항

3. 문화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춘천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사무국장이 한다.

제6조(위원) ① 문화원 원장은 위원장이 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

2.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3. 품위손상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, 일시,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평가) ① 위원장은 문화제의 프로그램, 운영,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문화제의 평가결과 개선,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문화제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 (2022. 5. 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